

## 싱가포르 개정전자거래법 개괄 - 전자통신협약 수용 부분을 중심으로 -

### I. 들어가기

1998년 세계 최초로 입법된 싱가포르 전자거래법<sup>1)</sup>은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준비한 전자상거래모델법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의 내용을 수용하였다.<sup>2)</sup> 전자거래법 입법 외에도 싱가포르는 2006년 7월 6일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사용에 관

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2005, 이하 “전자통신협약”)에 서명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분야에서 선구자라 할 수 있다.<sup>3)</sup> 더불어, 2010년 5월 19일 싱가포르 국회는 전자거래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하여 다시 한번 현 전자상거래법상의 허점을 개정하는 입법을 먼저 하였다.<sup>4)</sup> 이러한 개정의 목적은 전자통신협약을 싱가포르 국내법으로 법제화하려는 것으로<sup>5)</sup>



1) 싱가포르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8 No. 25 of 1998)은 1998년 6월 1일 국회에 상정되어 1998년 6월 29일에 통과되었으며 1998년 7월 3일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1998년 7월 10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2)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1996, with additional article 5 bis as adopted in 1998, New York, 1999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9.V.4). 싱가포르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내용을 국내법 입법에 수용하였다. 이에 관한 상황은 다음 참조: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electronic\\_commerce/1996Model\\_status.html](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electronic_commerce/1996Model_status.html)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1, annex 본 협약은 2005년 11월에 개최된 제60차 유엔 총회에 상정되어 국제 전자통신협약으로 채택되었다. 종래에는 협약의 약식 명칭을 International e-Contracting Convention (국제전자계약협약)으로 사용하였으나 본 협약은 국제 계약에 관한 사항 외에도 전자적 수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제반에 대한 법적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Electronic Communication Convention (ECC, 전자통신협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 2008년 1월 15일에 서명하였다. 서명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참조: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electronic\\_commerce/2005Convention\\_status.html](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electronic_commerce/2005Convention_status.html)

4) 싱가포르 전자거래법의 개정안은 2010년 4월 26일 국회에 상정되어 2010년 5월 19일에 통과되었다.

2010년 7월 9일 싱가포르 대통령이 동 개정법에 동의하여 싱가포르는 온두라스 다음으로 전자통신협약을 비준하게 되었다.<sup>5)</sup> 본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싱가포르 전자거래법(이하, “개정전자거래법”)의 조항 중 전자통신협약의 조항을 수용하는 내용을 위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II. 싱가포르 개정전자거래법 개괄

### 1. 구성 변경

기존에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전자거래법을 개정전자거래법에서는 총 5장으로 재구성하였다. 전자거래법의 제2장(전자 기록 및 전자 서명 개괄)과 제4장(전자 계약)이 합쳐져 개정전자거래법의 제2장(전자 기록, 전자 서명 및 전자 계약)으로 변경되었고, 전자 서명의 법적 효과, 인증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전자거래법의 제6장부터 제10장까지의 내용은 개정전자거래법 제4장(특정 보안 절차와 특정 보안 절차 제공자에 대한 규율)에 다루었으며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장관(minister)에게 위임하고 있다.

### 2. 개정내용 소개

개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1장(총괄)과 제2장(전자 기록, 전자 서명 및 전자 계약)은 전자통신협약의 조항을 수용하고 있다. 동 개정안에는 당사자의 위치(location of the parties),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 수신시기 및 장소(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make offers), 계약체결 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적용(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등 전자통신협약의 주요 조항을 수용하였다. 제3장(전자 기록과 전자 서명)과 제4장(특정 보안 절차와 특정 보안 절차 제공자에 대한 규율) 및 제5장(공공기관의 전자 기록과 전자 서명의 사용)은 크게 개정된 바 없다. 이에 따라, 본 페이지에서는 개정전자거래법 제2장의 내용을 위주로 검토하겠다.



5) Parliamentary debates, Singapore Official Report 11th Parliament Part II of Second Session, Volume 87, 26 April 2010.

6) 전자통신협약의 발효를 위하여는 3서명국의 비준을 요하며 3서명국의 비준 시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전자통신협약 제23조) 온두라스는 2010년 6월 17일에 동 협약에 비준하였다. 온두라스의 비준에 관하여는 다음 참조: <http://www.unis.unvienna.org/unis/pressrels/2010/unisl137.html>

### III. 개정전자거래법 제2장(전자 기록, 전자 서명 및 전자 계약)

####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 수신시기 및 장소

#####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를 수용한 전자거래법 제15조의 내용은 송신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기를 송신자의 지배(control) 밖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시기'라 표현하였다. 송신자의 지배 밖에 있는 정보시스템, 예를 들어 야후 메일 계정 사용자인 경우 타 웹 메일 서버로 이메일이 들어간 시기를 일컫는다. 이러한 표현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정보시스템(예를 들어 같은 웹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전자거래법은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시기(enters)'를 정보시스템을 '떠난 시기(leaves)'로 변경하였다.<sup>7)</sup>

구체적으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 시기에 관하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의 지배(control)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시기 또는 둘째, 송신자의 대리인의 지배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나 송신자 대리인의 지배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았다면 전자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의해 수령된 때를 말한다.<sup>8)</sup> 예를

들어, 핫메일 또는 야후메일과 같은 웹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인 이메일을 송부한 경우 동 이메일이 웹메일 서버를 떠난 시기를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되었다고 본다. 만약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웹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송신자가 송부한 이메일은 웹메일 서버를 떠나지 않고 같은 서버 내에서 수신자의 계정으로 보내지므로 웹메일 서버 즉,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적 의사표시인 이메일을 수신자가 수령한 시기를 송신 시기라고 본다.

#####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을 규정하는 전자거래법 제15조 제2항은 정보시스템을 수신지로 하여 수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동일한 정보시스템에 수신 받을 전자 주소 및 제2의 전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지정한 전자 주소가 상이한 정보시스템을 걸쳐 수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후 웹 이메일에 이메일 주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수신자의 경우 송신자의 이메일이 지정된 정보시스템(야후 웹메일 서버)에 들어가더라도 서버 오류 및 연결 오류 등으로 송신자의 이메일 계정에 수신자의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상업적 웹메일 같은 경우 원활한 속도를 위해 여러 서버를 전세계 각국에 두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어 특정 정보시



7) 개정전자거래법 제13조 제1항, 전자통신협약 제10조 제1항.

8) 개정전자거래법 제13조 제1항, 전자통신협약 제10조 제1항.

시스템을 지정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장소에 있는 여러 개의 다른 서버를 거쳐 이메일이 전달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전자거래법에서는 정보시스템이 아닌 수신인의 전자 주소를 특정하는 요건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 시기는 수신자가 전자적 의사를 받을 전자 주소를 특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가 지명한 전자적 주소에 도달한 때 전자적 의사표시는 수신자에 의하여 수신된 것으로 본다. 송신자가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 주소 외에 다른 주소로 의사표시를 송신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그 다른 전자 주소에 도달하여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고 또 그 전자 주소에 전자적 의사가 송신되었음을 인지한 시기에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되었다고 본다. 두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의 전자적 주소에 도달한 때 전자적 의사표시는 수신자에 의하여 수신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sup>9)</sup>

### 3) 전자적 의사표시의 장소와 당사자 위치

전자거래법은 당사자의 위치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전자적 의사표시의 장소를 규정하는 제15조 제5항에서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을 영업소로 보

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영업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상거소를 영업소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매매거래 또는 계약을 위해 사용된 제반 시설의 장소와 실제 영업소가 상이한 전자상거래의 특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관하여 개정전자거래법은 제2조 제2항에서 영업소의 정의를 그리고 제2조 제3항에서 영업소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자거래협약의 제2조 제2항은 영업소를 비단 계약의 성립을 위해 사용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임시적인 제공을 하는 곳 또는 정보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영업소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0)</sup> 또한, 자연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정의하고 있다.<sup>11)</sup> 또한 개정전자거래법은 당사자 위치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영업소 표시를 한 당사자가 그 장소에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sup>12)</sup> 나아가, 전자상거래의 유비쿼터스 특성을 고려한 두 조항이 삽입되었다. 첫째로 당사자의 위치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 장소가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한 설비 및 기술 장치가 존재하는 곳이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접속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존재하는



- 9) 개정전자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제4항, 전자통신협약 제10조 제2항.
- 10) 개정전자거래법 제2조 제3항 c호, 유엔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4항.
- 11) 개정전자거래법 제2조 제2항 b호, 유엔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3항.
- 12) 개정전자거래법 제2조 제3항 a호, 유엔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1항.

곳이라 하여 이를 당사자의 위치라고 볼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sup>13)</sup> 둘째, 당사자가 단지 특정 국가와 연결된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나라에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sup>14)</sup>

이런 '영업소'의 정의 및 관련 원칙에 근거하여 개정전자거래법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과 수신에 관하여 송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송신된 것으로 간주되고,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한다.<sup>15)</sup>

## 2. 청약의 유인

일반 오프라인 상점에서 전시된 상품을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 이름, 설명 및 가격은 청약으로 볼 수 없고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쇼핑몰 이용자가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아 구매 신청을 클릭하는 것을 청약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이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능상 동가성의 원칙(principle of functional equivalence)에 따른다. 따라서 개정전자

거래법에서는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하여 이루어진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의도가 그 제안을 승낙에 구속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sup>16)</sup>

## 3. 계약체결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적용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계약체결시에 자연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전자상거래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자연인의 개입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자연인의 검토를 요건으로 하게 되면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전자문서 차별금지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에 반한다. 따라서 개정전자거래법은 자동화시스템과 사람의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사람이 그로 인한 개별 행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sup>17)</sup>



- 13) 개정전자거래법 제2조 제3항 c호, 유엔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4항.
- 14) 개정전자거래법 제2조 제3항 d호, 유엔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5항.
- 15) 개정전자거래법 제13조 제5항, 전자통신협약 제10조 제3항.
- 16) 개정전자거래법 제14조, 전자통신협약 제11조.
- 17) 개정전자거래법 제15조, 전자통신협약 제12조.

#### 4.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전자상거래상 대부분의 계약체결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오류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사용자가 10개의 상품 주문을 하기 위해 잘못하여 10 대신 100을 입력하거나 실수로 마우스를 클릭한 경우가 일반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화된 시스템은 자연인의 실수를 철회하기 이전에 상품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전자거래법에서는 당사자가 자동화정보시스템과 교환되는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입력 실수를 하였을 때 그 자동화정보시스템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오류를 범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부분을 철회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권리 부여의 요건으로 첫째,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오류사실을 안 직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거나, 그가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오류를 범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거나 둘째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부터 어떤 물질적 이익 또는 가치를 얻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sup>18)</sup>

#### IV. 마치며

싱가포르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 수신시기 및 장소, 청약의 유인, 계약체결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적용 등 전자통신협약의 내용을 적용하여 전자거래법을 개정하였고 온두라스에 이어 전자통신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동 협약의 두 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제정된 전자통신협약의 발효요건인 3개 서명국의 비준이 눈앞에 보인다. 이외에도 과테말라<sup>19)</sup>와 베트남<sup>20)</sup>에서는 내부 사정으로 비록 비준되지 않았지만 전자통신협약의 조항이 국내법에 수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동 협약의 비준에 대한 공개 논의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 이와 관련한 모델법안을 준비 중이다.<sup>21)</sup> 이렇듯, 다수의 국가는 전자상거래의 원활화와 이를 위한 법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하여 국내 전자거래법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국제전자거래법의 현대화와 점진적인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적, 비즈니스 측면 그리고 법률 측면에서 선두주자인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이 아 름

(미국주재 외국법제조사원)



18) 개정전자거래법 제16조, 전자통신협약 제14조.

19) Decree No. 47-2008 of 19 August 2008, "Ley para el reconocimiento de las comunicaciones y firmas electrónicas". The decree is already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0) Decree No. 57/2006/ND-CP of 9 June 2006, "Decree on Electronic Commerce".

21) 호주의 공개 논의에 대하여는 다음 참조: <http://www.ag.gov.au/ecommercereview>